

법원 홈페이지 관리·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기획법관 제도의 변화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등을 고려하여 사법행정 업무처리 법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“기획법관”을 “사법행정지원법관”으로 개정함(안 제22조제2항)

3. 법원 홈페이지 관리·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 홈페이지 관리·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법원 홈페이지 관리·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기획법관”을 “사법행정지원법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 (운영책임관 등) ① (생 략) ② 각급기관의 운영책임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<u>기획법관</u> 또는 공보관을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총괄운영담당자로 지정한다.	제22조 (운영책임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사법행정지원</u> <u>법관</u> ----- 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254